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 (찬성자 39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596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3. 4. 3.

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상위 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인용 조문 수정함. 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 (이하 ‘영’이라고 함)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(생략)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<u>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</u>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- 안 제9조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「도로법」 제97조1)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의 제6

1) 제97조(공익을 위한 처분)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 
1.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
2.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
3.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
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.

항2)과 제7항3)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- 인용 조문인 영 제71조 중 제3항이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“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”를 개정된 “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”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- 참고로, 신설된 영 제71조제3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관리청이 1년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.

---

2)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.

3) ⑦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·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